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94호
2024년 4월 8일
월요일

훈 령

○ 훈 령 제 4 1 9 호 「남동구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 회 사 무 국 2

공 고

○ 공 고 제 7 1 4 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안 전 총 괄 과 5
○ 공 고 제 7 1 5 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 전 총 괄 과 12
○ 공 고 제 7 1 6 호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도 시 디 자 인 과 19
○ 공 고 제 7 1 7 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 견 수 려 도 시 디 자 인 과 28
○ 공 고 제 7 2 1 호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총 무 과 41
○ 공 고 제 7 2 4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68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훈 령

남동구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동 구 의 회 의 장 오 응 환

2024년 4월 8일

남동구 훈령 제419호

남동구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남동구의회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특별 포인트”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배정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첫째,둘째아”를 “첫째아를 출산한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1명당 1,000 포인트, 둘째아”로, “500”을 “2,000”으로, “적용 대상자”를 “적용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 포인트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포인트 배정기준을 확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 구성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민원 서비스 질 향상

□ 주요내용

- 출산장려 포인트 확대 : (안 제8조제1항제4호)
 - (기존) 첫째,둘째아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500포인트 1회 배정,
셋째아 이상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3,000포인트 1회 배정
 - (변경) 첫째아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1,000포인트 1회 배정,
둘째아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2,000포인트 1회 배정,
셋째아 이상 출산자에 대하여 1명당 3,000포인트 1회 배정
- 특별 포인트 신설 : (안 제8조제1항제5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14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기금의 용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안전총괄과
- 연 락 처 : 전화 453-2312 FAX 453-231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 (※ FAX 전송 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4. 참고사항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기금의 용자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안 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 인감증명 요구 내용을 삭제함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
- 7차 민생토론회 자료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금 원정 (W)

위의 금액을 로 융자함에 있어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증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 1. 융자금은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겠음.
- 2. 융자금 지원과 관련된 법령, 남동구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겠음.
- 3. 위의 각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출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남동구청장 귀하

[참고자료]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1914년 도입 이래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과도한 인감증명서* 요구 및 방문 발급에 따른 국민불편 발생
 - * (‘23.12. 기준) 4,142만명 인감 등록, 연간 인감증명서 2,984만통 발급
 - : 부동산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
-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을 ’25년까지 정비(‘24. 1. 30. 민생토론회)

— < 대통령 지시사항(‘24. 2. 6. 국무회의) > —

- ▶ 각 부처에서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 제7차 민생토론회 자료

- (인감증명제도 혁신) 인감증명 요구사무의 불필요한 사무 정비 및 디지털 방식의 대체 수단 제공 추진
 - 불필요한 인감증명사무 정비 (2,145건 / 2,608건, 전체 82%)

— < 요구사무 정비기준 > —

- ▶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는 원칙적 폐지(존치 필요시 근거규정 마련)
- ▶ 기 폐지된 인감증명 요구사무와 동일.유사한 사무는 원칙적 폐지
- ▶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대체
- ▶ 인감증명이 불가피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병행가능토록 근거규정 정비

- 관행적 요구사무(295건) 조속 정비(~’24. 12., 11%)
- 근거 규정이 있는 요구사무 단계적 정비(~’25. 6.)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15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변경된 부대명칭 현행화 : (안 제3조제2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안전총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안전총괄과
- 연 락 처 : 전화 453-2313 FAX 453-2319

4. 참고사항

-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된 부대 명칭 현행화 : (안 제3조제2항제7호)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국군제559방첩부대 부대원”을 “관할 국군 방첩부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생략)	제3조(협의회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②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국군제559방첩부대 부대원</u> ----- -----	7. <u>관할 국군 방첩부대원</u> ----- -----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지청장 또는 검사
5.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16호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경관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건축물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내용 추가 : (안 제26조)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개정 : (안 제2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도시디자인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836 FAX 453-2839

4. 참고사항

-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6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됨에 따라 인천시에서 지정하는 중점경관관리 구역을 건축물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내용 추가 : (안 제26조)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개정 : (안 제27조)

☐ 본 문 :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경관법」 제28조제1항, 제3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를 “경관협정체결자”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로,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 및 사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u>영 제5조제2항</u>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 <u>법 제5조제2항</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u>경관협정체결자</u> (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 ----- <u>경관협정체결자</u>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생략) 2. <u>· 건축법 ·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제4호</u> 부터 제8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u>별표 제1호</u> 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 ----- ----- ----- -----. 1. (현행과 같음) 2. 「 <u>건축법 시행령</u> 」 제5조의5 <u>제1항제4호</u> ----- ----- ----- <u>별표</u> ----- -----

<신 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라 남동구 경관위원회는 남동구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신 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호가목 및 사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

2. 건축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②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따른다.

[참고자료]

□ 경관법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17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 : (안 제7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 : (안 제12조, 제13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표 별표 2 추가 :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남동구청 도시디자인과
- 연 락 처 : 전화 453-22836 FAX 453-2839

4. 참고사항

-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하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 : (안 제7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기준 정비 : (안 제12조, 제13조)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표 별표 2 추가 : (별표 2)

☐ 본 문 :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 자문에 관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실내건축”을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형물, 영상매체”로 한다.

② 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2와 같다.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2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5명 이상 8명”을 “3명 이상 6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제14조제3항제1호 중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을 “상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심의대상 중 인천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이거나 인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제7조 제2항 관련)

분 류		세 부 항 목	심의기준
공공공간		공원, 광장(지하광장 포함), 자전거도로, 특화거리, 등산로, 산책로, 수변공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5억 이상 10억 미만
공공시설물	도로 시설물	가로등, 펜스, 볼라드, 신호등주, 버스 및 택시쉼터, 지하철지하보도출입구, 외부엘리베이터, 자전거보관대, 방음벽,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편의 시설물	벤치, 파고라, 가로화분대(플랜터), 수목보호덮개, 관광안내소, 음수대, 분수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휴지통, 간이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급 시설물	맨홀덮개, 지하철 환기구, 배전함, 신호등 및 가로등 제어함, 제설함, 소화전, 전화부스, 전신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공공 및 사설안내표지, 주차장안내표지 및 주차요금표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표지, 버스 및 지하철 노선안내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안내표지, 지역안내사인,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 오염 전광판, 교통 상황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환경연출 시각매체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슈퍼그래픽, 공사장가설울타리·가설가림막,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총 사업비는 각종 보상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 1. (생략) 2. <u>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u> 3. (생략) 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6. (생략) ②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19. 6. 28.)</u> ③ <u>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u>은 도시디자인 업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u>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u>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 ----- <u>관한</u> ----- 5.·6. (현행과 같음) ② <u>위원회 심의대상은 별표2와 같다.</u> 1. <u>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2억원 이상</u> 2. <u>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u> 3. <u>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u> ③ <u>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u>

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 1. (생 략)
-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신 설>

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
-----.

- 1. (현행과 같음)
- 2. -----
-----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형물, 영상매체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시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8
명 이하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
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
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심
의를 거친 경우

2. ~ 6. (생략)

<신설>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
야 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3명 이상 6
명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상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디자인 -----

2. ~ 6. (현행과 같음)

7. 심의대상 중 인천시 우수공
공디자인 인증제품이거나 인
천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④ (생 략)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u>별표</u>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u>을 적용하는 경우</u>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별표1</u>----- ----- -----.
---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등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은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공공간 조성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공공시설물: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3. 공공시각매체: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4.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군수·구청장이 발주하는 사업 중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이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기본적인 외부디자인 변경 없이 공공시설물등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일정 구간 내에 설치된 기존 공공시설물등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 설치하는 경우
5. 심의대상 중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디자인 심의를 거친 경우
7. 재해·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서 제외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⑥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⑧ 위원회에 대한 심의·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21호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변경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가산점 등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 나.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추가(안 제13조제4항)
- 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 라. 전문직위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안 제33조의2, 안 별표 24)
- 마.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032-453-2192, FAX 032-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64조, 제64조의2
- 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25조의3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을 위한 사항을 변경하고,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가산점 등의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안 제8조제3항)
-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 제한 추가(안 제13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 전문직위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근무경력 가산점 기준 신설(안 제33조의2, 안 별표 24)
- 별표 및 별지 서식 보완·개선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64조, 제64조의2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25조의3

남동구 규칙 제 호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

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33조의2제1항 전단 중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를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제2호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7, 별표 2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 별표 24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5 및 별표6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자등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24]

교류직위 등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산점(제33조의2 관련)

부여 기준	가산점	비 고
인사교류(영 제27조의5)에 임용된 5급 공무원	교류 임용 1년 경과 후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수도권(서울,경기) : 1개월 마다 0.02점 * 인천시 제외 비수도권 : 1개월마다 0.05점	최대 1.2점
전문직위로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3년 초과 4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점 -4년 초과 5년 이하 : 1개월 마다 0.025점 -5년 초과 : 1개월 마다 0.03점	최대 1.2점
재난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 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6급 이하 공무 원. 다만, 대규모 재난 대응·복 구 전담자로 지정된 경우 지정 일부터 부여한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직위 지정 1년 경과 후 지정일부터 1개월마다 0.01점	최대 0.5점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 상반신 · 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 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㉞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등록번호

제 회 번

※ 급

직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 군

인

인

④ 주 소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사진부착)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연 월 일

종 별

⑨ 상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또는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군·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 -----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u>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응시연령) ----- ----- ----- --- 18세 이상이어야 ----- -----. <삭 제> <삭 제>
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생략)	제13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

략)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과 같음)

④ -----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

제17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점 부여 요건 및 가산
 점은 별표 24와 같다. 이 경우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
 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
2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
다.

[시행 2022.2.1.]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
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
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
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33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

-----.

②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에 따
른 전문직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범위, 대상 등은 구청장
이 따로 정한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가산점 및 감점 평정기준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 ⑧ <생략>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 ③ <삭제>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제25조의3(가산점 부여 기준의 공개 등)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임용권자는 가산점의 부여 기준·요건 및 가산점 평정 대상 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신설 및 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

는 사전에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4-72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시정조치(개선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개선명령을 시행하고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대 상 : 자동차관리법위반 대상자 15명 (별첨)
2. 공 고 기 간 : 2024. 4. 5. ~ 2024. 4. 26.
3. 공시송달 내용

상기와 같이 귀하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개선명령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공고기간 경과 후 개선명령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절차로 진행됩니다.
5. 위 공시송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 자동차관리팀 (☎ 032-453-28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시정조치(개선명령) 통지서 1~2월 반송분 공시송달내역

순번	차량번호	성명	반송일자	위반항목	우편번호	주소
1	36러4547	김*현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4번길 **, **2호(구월동)
2	인천미추홀하9136	조*철	2024.3.4. 주소불명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45-* (간석동)
3	56도6300	박*영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 **-, *동 ***호(구월동)
4	191오3848	김*혁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축로 ***, ***호(간석동)
5	65오8822	하**** 주식회사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 *층(구월동)
6	경기화성자8474	맹*호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 ***동 ****호(간석동)
7	57도5991	SA*****V B****D KE*****Y U**I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156번길 **, (고잔동)
8	인천남동파8241	정*연	2024.3.5. 수취함	등화장치 임의설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말로 **-, ***호(구월동)
9	인천남동하2135	김*수	2024.3.5. 수취함	번호판오염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739번길 *, ***호(구월동)
10	서울금천자7488	박*영	2024.3.5. 수취함	번호판오염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말로32번길 **, ***호(구월동)
11	45모7546	김*	2024.3.5. 수취함	번호판미봉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 ****동 ****호(구월동)
12	199더2423	신***주식회사	2024.3.5. 수취함	번호판미봉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구월동)
13	46저0994	유*아	2024.3.5. 수취함	번호판 스티커부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31번길 **-, ***호(구월동)
14	경기의정부사9280	윤*일	2024.3.5. 수취함	번호판 오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6번길 **, ***호(서창동)
15	경기고양하8644	전*계	2024.3.5. 수취함	번호판 오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231번길 **-, ***호(구월동)